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어선안전조업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조승환 (해양수산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어선안전조업법」 제24조(구명조끼 등의 착용)가 개정('22.10.18 공포, 공포 3년 후 시행)됨에 따라 선장에게 승선원의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(救命衣)를 착용하게 할 의무가 신설되어 시행령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한편, 일부 항·포구가 서해조업한계선 이북에 위치하여 출·입항하는 어선들의 월선이 불가피함에 따라 서해조업한계선을 조정하고, 시행령 [별표1] 서해조업한계선의 일부 위치가 부정확한 지명으로 표기되어 위·경도 좌표를 병행 표기하고자 하는 것임

3. 주요내용

- 가. 구명조끼·구명의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와 구명조끼·구명의를 착용하지 않은 자가 승선한 어선의 선장도 과태료 부과(안 제17조, [별표5])
- 나. 서해조업한계선 범위 조정 및 위·경도 좌표 병행 표기(안 제2조 제1항, [별표1]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3. 3. 17. ~ 2023. 4. 26.)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

- 규제 신설·폐지 등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제2호와 부도 2를 다음과 같이 한다. 별표 5 제2호사목 위반행위란 사목 중 “구명조끼”를 “구명조끼·구명의”로, “경우”를 “경우와 구명조끼·구명의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이 승선한 어선의 선장”으로, 근거 법조문 “법 제32조제2항제4호”를 “법 제32조제2항제4호, 제5호로 한다.

부 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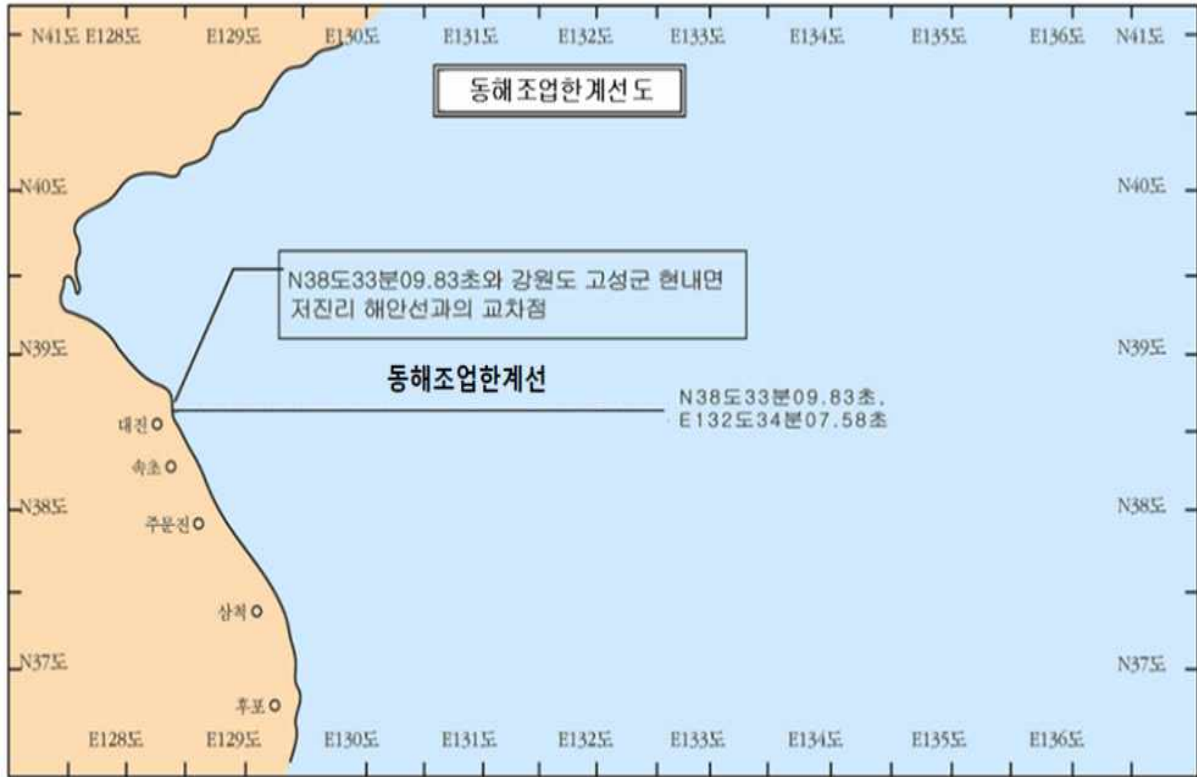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2025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조업한계선의 범위(제2조제1항 관련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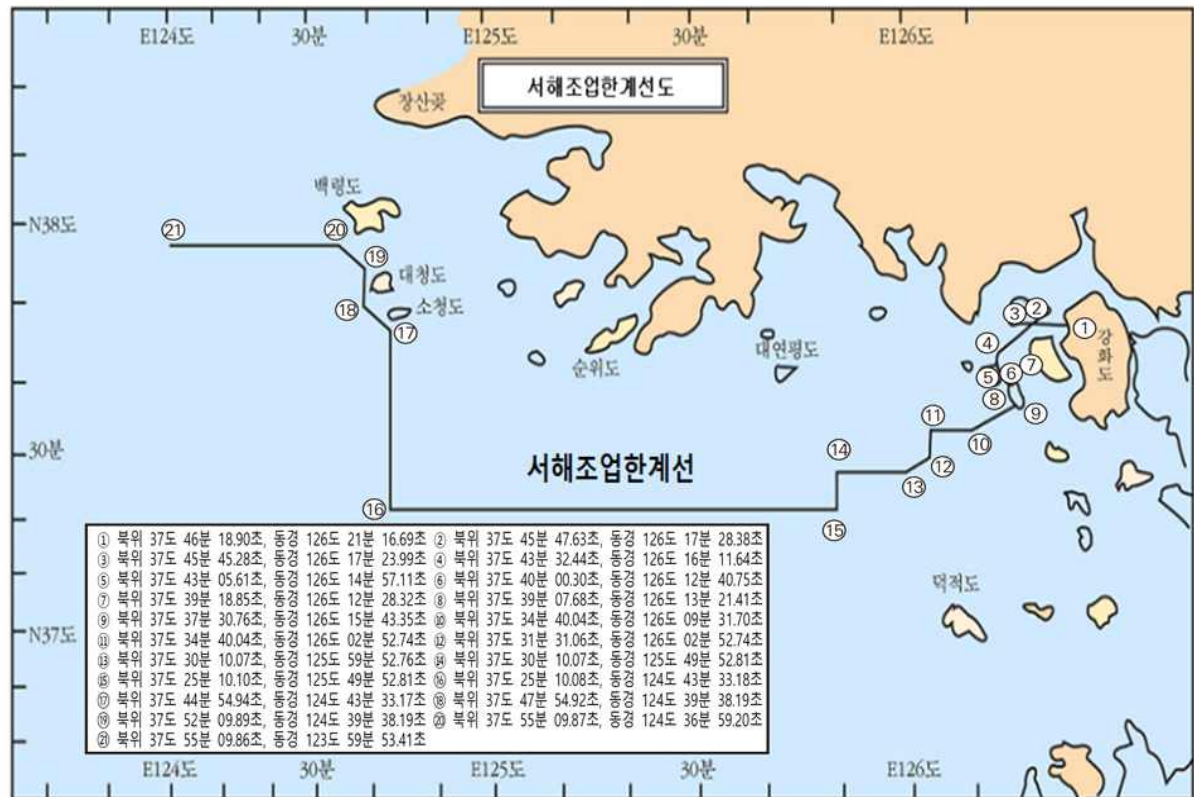
1. 동해조업한계선: 다음 각 목의 지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을 말하며, 동해조업한계선도는 부도 1과 같다.
 - 가. 북위 38도 33분 09.83초와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저진리 해안선의 교차점
 - 나. 북위 38도 33분 09.83초, 동경 132도 34분 07.58초
2. 서해조업한계선: 다음 각 목의 지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을 말하며, 서해조업한계선도는 부도 2와 같다.
 - 가. 강화도 창후리항 어항구역 북쪽 해안선 끝단(북위 37도 46분 18.90초, 동경 126도 21분 16.69초)
 - 나. 교동도 읍내리 남산포항 동쪽 선착장 시작점(북위 37도 45분 47.63초, 동경 126도 17분 28.38초)
 - 다. 교동도 읍내리 남산포항 서쪽 선착장 최끝단(북위 37도 45분 45.28초, 동경 126도 17분 23.99초)
 - 라. 미법도 최동단(북위 37도 43분 32.44초, 동경 126도 16분 11.64초)
 - 마. 서검도 최동단(북위 37도 43분 05.61초, 동경 126도 14분 57.11초)
 - 바. 불음도 최동단(북위 37도 40분 00.30초, 동경 126도 12분 40.75초)
 - 사. 불음도 최남단(북위 37도 39분 18.85초, 동경 126도 12분 28.32초)
 - 아. 주문도 최서단(북위 37도 39분 07.68초, 동경 126도 13분 21.41초)
 - 자. 주문도 최남단(북위 37도 37분 30.76초, 동경 126도 15분 43.35초)
 - 차. 북위 37도 34분 40.04초, 동경 126도 09분 31.70초
 - 카. 북위 37도 34분 40.04초, 동경 126도 02분 52.74초
 - 타. 북위 37도 31분 31.06초, 동경 126도 02분 52.74초
 - 파. 북위 37도 30분 10.07초, 동경 125도 59분 52.76초
 - 하. 북위 37도 30분 10.07초, 동경 125도 49분 52.81초
 - 거. 북위 37도 25분 10.10초, 동경 125도 49분 52.81초
 - 너. 북위 37도 25분 10.08초, 동경 124도 43분 33.18초
 - 더. 북위 37도 44분 54.94초, 동경 124도 43분 33.17초
 - 러. 북위 37도 47분 54.92초, 동경 124도 39분 38.19초
 - 머. 북위 37도 52분 09.89초, 동경 124도 39분 38.19초
 - 버. 북위 37도 55분 09.87초, 동경 124도 36분 59.20초
 - 서. 북위 37도 55분 09.86초, 동경 123도 59분 53.41초

[부도 2]

동해조업한계선도



서해조업한계선도

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[별표 1] 조업한계선의 범위(제2조제1항 관련) 1. (생략) 2. 서해조업한계선: 다음 각 목의 지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을 말 하며, 서해조업한계선도는 부도 2와 같다. 가. <u>강화도 창후리항 선착장 최 끝단</u> 나. <u>교동도 읍내리 남산포항 선 착장 최끝단</u> 다. <u>미법도 최동단</u> 라. <u>서검도 최동단</u> 마. <u>불음도 최남단</u> 바. <u>주문도 최서단</u> 사. <u>주문도 최남단</u> 아. 북위 37도 34분 40.04초, 동 경 126도 09분 31.70초 자. 북위 37도 34분 40.04초, 동 경 126도 02분 52.74초	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[별표 1] 조업한계선의 범위(제2조제1항 관련) 1. (생략) 2. 서해조업한계선: 다음 각 목의 지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을 말하 며, 서해조업한계선도는 부도 2 와 같다. 가. <u>강화도 창후리항 어항구역 북쪽 해안선 끝단(북위 37도 46 분 18.90초, 동경 126도 21분 16. 69초)</u> 나. <u>교동도 읍내리 남산포항 동 쪽 선착장 시작점(북위 37도 45 분 47.63초, 동경 126도 17분 28. 38초)</u> 다. <u>교동도 읍내리 남산포항 서 쪽 선착장 최끝단(북위 37도 45 분 45.28초, 동경 126도 17분 23. 99초)</u>

<u>차.</u> 북위 37도 31분 31.06초, 동경 126도 02분 52.74초	<u>라.</u> 미법도 최동단(북위 37도 43분 32.44초, 동경 126도 16분 11.64초)
<u>카.</u> 북위 37도 30분 10.07초, 동경 125도 59분 52.76초	<u>마.</u> 서검도 최동단(북위 37도 43분 05.61초, 동경 126도 14분 57.11초)
<u>타.</u> 북위 37도 30분 10.07초, 동경 125도 49분 52.81초	<u>바.</u> 불음도 최동단(북위 37도 40분 00.30초, 동경 126도 12분 40.75초)
<u>파.</u> 북위 37도 25분 10.10초, 동경 125도 49분 52.81초	<u>사.</u> 불음도 최남단(북위 37도 39분 18.85초, 동경 126도 12분 28.32초)
<u>하.</u> 북위 37도 25분 10.08초, 동경 124도 43분 33.18초	<u>아.</u> 주문도 최서단(북위 37도 39분 07.68초, 동경 126도 13분 21.41초)
<u>거.</u> 북위 37도 44분 54.94초, 동경 124도 43분 33.17초	<u>자.</u> 주문도 최남단(북위 37도 37분 30.76초, 동경 126도 15분 43.35초)
<u>너.</u> 북위 37도 47분 54.92초, 동경 124도 39분 38.19초	<u>차.</u> 북위 37도 34분 40.04초, 동경 126도 09분 31.70초
<u>더.</u> 북위 37도 52분 09.89초, 동경 124도 39분 38.19초	<u>카.</u> 북위 37도 34분 40.04초, 동경 126도 02분 52.74초
<u>러.</u> 북위 37도 55분 09.87초, 동경 124도 36분 59.20초	
<u>머.</u> 북위 37도 55분 09.86초, 동경 123도 59분 53.41초	

타. 북위 37도 31분 31.06초, 동
경 126도 02분 52.74초

판. 북위 37도 30분 10.07초, 동
경 125도 59분 52.76초

하. 북위 37도 30분 10.07초, 동
경 125도 49분 52.81초

거. 북위 37도 25분 10.10초, 동
경 125도 49분 52.81초

너. 북위 37도 25분 10.08초, 동
경 124도 43분 33.18초

더. 북위 37도 44분 54.94초, 동
경 124도 43분 33.17초

리. 북위 37도 47분 54.92초, 동
경 124도 39분 38.19초

머. 북위 37도 52분 09.89초, 동
경 124도 39분 38.19초

버. 북위 37도 55분 09.87초, 동
경 124도 36분 59.20초

서. 북위 37도 55분 09.86초, 동
경 123도 59분 53.41초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0 - 5523